품새 경기 규칙

WTFD

제 1 조 (목 적)

본 규칙은 태권도 품새 수련의 전반적 기술 수준을 높이고 품새경기 분야의 기술 및 발전을 기함으로서 태권도 품새의 기술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규칙은 본 회와 각급 산하 지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모든 대회 (본 회 승인대회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 (종목)

품새경기의 종목은 다음과 같다.

- 1. 공인품새 (태극3장~한수)
- 2. 경기품새 (비각, 한류)
- 3. 자유 품새
- 4. 태권 체조

제4조 (부별 구분)

품새 경기는 개인전, 단체전, 복식전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부별로 시행된다.

1. 개인전

가. 개인전 부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다.

부 별	자 격
초 등 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중 등 부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고 등 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대 학 부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성인 1부	만18세 이상 ~ 만29세 까지
성인 2부	만30세 이상 ~ 만39세 까지
장년 1부	만40세 이상 ~ 만49세 까지
장년 2부	만50세 이상 ~ 만59세 까지
장년 3부	만60세 이상 ~ 만64세 까지

장년 4부 만65세 이상		
나. 부별 구분은 대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L W	자 격	
부 별	자 격	
무 멀 초 등 부	자 격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초 등 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중 등 부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	
고 등 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대 학 부 (1, 2)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성인 1부	만18세 이상 ~ 만24세 까지	
성인 2부	만25세 이상 ~ 만29세 까지	
성인 3부	만30세 이상 ~ 만34세 까지	
성인 4부	만35세 이상 ~ 만39세 까지	
장년 1부	만40세 이상 ~ 만44세 까지	
장년 2부	만45세 이상 ~ 만49세 까지	
- 장년 3부	만50세 이상 ~ 만54세 까지	
- 장년 4부	만55세 이상 ~ 만59세 까지	
장년 5부	만60세 이상 ~ 만64세 까지	
 장년 6부	만65세 이상	

- 다. 초등부는 대회 요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학년부(1~2학년), 중학년부(3~4학년), 고학년부(5~6학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단, 경우에 따라 학년별로 실시될 수 있다.)
- 라. 중등부(1, 2, 3학년), 고등부(1, 2, 3학년), 대학부(1, 2부), 성인부, 장년부는 남녀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부는 대학소속으로 등록한 선수로 한한다.
- 마. 개인전은 4명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2. 단체전

- 가. 단체전의 부별 구분
 - 단체전의 부별 구분은 개인전 부별 구분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 단체규성은 남자 단체전, 여자단체전, 혼성단체전, 남녀복식전으로 시행될 수 있다.
- 나. 종목에 따라 단체전 구성방식 및 구성인원(3~5명 이내)은 변경 될 수 있다. 단, 이를 정하는 대회요강은 본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다. 단체전은 4팀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4팀 미만일 경우 경기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5조 (경기장)

경기장은 $10m \times 10m$ 넓이의 수평 정방형으로 탄력성 있는 매트 또는 마룻바닥이어야 한다. 경기장은 필요에 따라 높이를 올린 경기대로 할 수 있다. 단, 종목의 특성과 단체전의 규모에 따라 경

기장의 면적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선수)

- 1. 자격
 - 가. 국기원 품·단증 소지자
 - 나. 당해연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다. 각 부별 소속 등록사상 및 연령에 해당하는 심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의무
 - 가. 선수는 연맹이 공인한 도복 및 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나. 경기중 선수는 경기에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신구 또는 부착물이나 휴대폼을 착용하거나 지닐 수 없다.
 - 다. 본 연맹은 도복의 장식에 대한 규제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한다.
 - 라. 선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하는 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 서는 안되며, 적발시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고 차위가자 등위를 승계하며 선수와 임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다.

제7조 지도자

- 1. 자격
 - 가. 사범자격증 소지자
 - 나. 본 연맹의 품새 경기규칙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
 - 다. 본 연맹의 품새 경기규칙강습회 교육을 수료한 자로써 심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의무
 - 가. 품새 경기규칙을 잘 알고 지켜야 한다.
 - 나.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다. 경기진행에 미협조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다.

제8조 (경기 방식)

- 1. 구성
 - 가. 일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
 - 나. 컷 오프(단계별 점수제) 방식
 - 다. 혼합 방식 (컷 오프 방식 + 토너먼트 방식)

- 라. 라운드 로빈(리그전) 방식
- 2. 경기 방식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회 요강을 통해서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주

- ① 컷 오프 방식은 예선·본선·결선으로 이루어 진다.
- 가. 예 선 : 참가 선수 중 상위 점수 50%를 선발한다.
- 나. 본 선 : 예선에서 선발된 선수 중 8명을 선발한다.
- 다. 결 선 : 본선에서 선발된 8명 중 최종 등위를 결정한다.
- ② 혼합방식은 예선과 본선은 컷 오프 방식으로 선발하고 결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한다.
- 가. 예 선 : 참가 선수 중 컷 오프 방식으로 상위점수 50%를 선발한다.
- 나. 본 선 : 예선에서 선발 된 선수 중 상위점수로 8명(팀)을 선발한다.
- 다. 결 선 : 본선에서 선발된 8명(팀) 선수를 본선 성적순에 따라 시드 배정한 후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등위를 결정한

다.

제9조 (공인품새의 지정)

- 1. 지정품새는 2개의 품새를 원칙으로 하고 대회요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2. 지정품새 추첨방식은 경기 당일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추첨 후 발표 한다.
- 3. 공인품새 경기는 각 부별로 다음의 표에서 정한 품새 가운데서 지정 또는 추첨하여 정할 수 있다.

4. 부별 지정 품새

부 별	지정 품새	
초 등 부	태극 3·4·5·6·7·8장, 고려, 금강, 태백	
중 등 부	태극 6·7·8장, 고려, 금강, 태백, 평원, 비각	
고 등 부	태극 7·8장,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비각	
대 학 부	태극 8장,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비각	
성인 1부		
성인 2부	그것 그가 데뷔 편이 시되 되데 뭐기	
장년 1, 2부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장년 3, 4부	금강, 태백, 평원, 십진, 지태, 천권, 한수	

제10조 (경기시간)

각 종목별 제한 경기시간은 다음과 같다.

종 목	제한 시간
공인 품새	1분 30초 이내(1개 품새시 해당)
경기 품새, 자유 품새, 태권 체조	2분 이내

제11조 (감정 및 탈락)

- 1. 감정 사항
 - 가. 종목별로 지정된 제한 경기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0.5(10점제 일 때)를 감점한다.
 - 나. 규정에 없는 동작(틀린 동작, 기합 등)을 하면 0.3(10점제 일 때)을 감점한다.
 - 다. 태권체조의 경우 참가신청과 다른 인원으로 출전한 경우 0.5점 "최종점수"에서 감점한다.
- 2. 탈락 사항
 - 가. 단체전의 경우 소속선수의 불참으로 인해 단체규성에 미달 또는 초과 될 때는 탈락된다.
 - 나. 참가선수 중 부정선수 발견시 게임 몰수 및 탈락한다.(지도자 및 해당 팀 징계)
 - 다. 고의로 기권을 하거나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선수 및 지도자를 징계한다.
 - 라. 중복출전은 할 수 있다.
 - 마. 경기시간에 경기장 입장을 못한 경우 탈락한다.

제12조 (채점 및 결과의 표출)

- 1. 품새 채점의 기준
 - 가. 정확성
 - ① 기본동작
 - ② 각 품새별 세부 동작
 - ③ 균형
 - 나. 숙련성
 - ① 동작의 기술적 특성의 표현
 - ② 조화(강유·완급·리듬)
- 2. 태권체조 채점의 기준
 - 가. 정확성
 - ① 동작의 정확성 및 균형
 - ② 팀의 일치도
 - 나. 예술성
 - ① 음악과 동작의 조합성
 - ② 동작의 다양성과 창조성
- 3. 품새경기는 10점제 또는 100점제로 할 수 있으며, 기술내용은 정확성, 숙련성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 4. 점수의 배분은 아래와 같다.

항 목	10점제	100점제
-----	------	-------

정 확 성	3점	30점
숙 련 성	7점	70점

- 5. 각 심판이 채점한 점수의 항목별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의 합으로 한다.
- 6.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최고·최하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한다.
- 7. 총점도 동점일 경우 숙련성·정확성의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 8. 심판의 채점 결과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9. 채점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방법은 본 규정의 시행세칙인 "품새 경기채점지침"에 따른다. 단, 채점지침은 협회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다.

제13조 (동점의 처리)

- 1. 평균점수, 총점수, 숙련성, 정확성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재경기를 할 수 있다.
- 2. 컷 오프 방식 예선전의 경우 동점자의 수에 따라 재경기 또는 동점 자 전원을 다음 회전에 진출시킬 수 있다.

제14조 (경기 중단 상황)

- 1. 경기중 경기가 불가항력의 이유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수가 부상 또는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 경기시간 내에 경기를 속개하지 못할때는 실격처리 한다.

제15조 (심판원)

1. 자격 : 협회에 등록된 품새 심판 자격증 소지자

2. 구성 : 품새경기는 5심제 또는 7심제로 실시될 수 있다.

3. 복장 : 심판은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원

채점기의 관리 및 채점과 승패 등 경기에 관련한 기록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원을 둔다.

제17조 진행원

진행원은 선수를 파악하고 선수의 입·퇴장과 "시작", "바로"를 포함한 경기 전반의 진행을 한다. 또한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판을 보조한다.

제18조 (소 청)

- 1. 소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가. 자격: 소청위원은 기술전문위원회 임원 또는 태권도 품새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한다.
 - 나. 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5~7인으로 한다.
 - 다. 절차 : 임원장은 대회 개최일전에 소청위원장과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라. 책임 : 소청위원장은 소청심의를 통해 판정의 정정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회 기간 중에 소청위원회는 현장상벌위원회를 겸한다.
- 2. 소청 심의 절차
 - 가.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15만원을 경기종료 후 3분 이내에 소청의사를 표하고,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청위원은 필요에 따라 해당관련 된 심판을 소환, 진상을 문의할 수 있으며 정기록지나 경기내용의 비디오 판독 등을 검토 후 심의하며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 3. 소청위원회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 결과의 처리
 - 가. 점수계산의 착오나 청·홍 선수의 착각에 의한 경우는 그 결과를 번복한다.
 - 나. 소청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심판의 징계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

- 1. 경기에 관한 사태는 해당 경기심판원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 2. 대회조직위원회는 경기기록·보관을 위해 각 코트마다 비디오 기록장치를 준비한다.
- 3.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회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